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354 |
|----------|------|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4조·제35조 및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에서 전립한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병원의 명칭은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으로 정함(안 제2조)
- 나. 병원 입원대상자는 안산시 거주자를 우선 입원시키고, 퇴원 이후에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 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 다.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함(안 제6조)
- 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입소노인에게 수준 높은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 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에게 5년 이내의 위탁기간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 계약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규정을 정함(안 제7조)
- 마. 수탁자가 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 하도록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함(안 제9조)

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의료법 제3조·제35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3조·제24조
- 노인복지법 제34조·제35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별첨)

- 입법예고 : 2005.5.1 ~ 5.21(20일간)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4조·제35조 및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에서 건립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번지 내에 둔다.

제3조 (업무) 노인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치료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치매 및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5.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6.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7.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
8.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9.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제4조 (입원 및 퇴원) ① 노인병원의 입원은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안산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 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 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의료수가) ① 노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병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계약 할 수 있다.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② 노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병원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의 법인 시설과 인력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노인병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기타 노인병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노인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탁자는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재 위탁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규정) 수탁자는 노인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 간호, 보호, 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
5. 입원자 등에 대한 요양치료 체계와 기타 서비스 내용
6.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7. 비상재난(화재 등)에 대한 대책
8. 기타 노인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기록의 정리)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기타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제11조 (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매년 9월 30까지 노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독립회계로써 별도 계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노인병원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노인병원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노인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실·과 | | 사회복지과 |
|-------------|----------------|--------------------|
| 입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사회복지과장 이 권 현 |
|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노인담당 김 장석 |
| | 담당자 성명·전화 | 김 춘 선 (행정 3352) |

관계법령 발췌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③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④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⑥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⑦ “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5조 (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3.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②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

전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삭제>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 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 (시설의 위탁) ①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갱신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2. 실비노인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이상의 자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증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증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6. 노인전문병원
 -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실비보호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각각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각각 당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검토제출내용 및 검토의견서

-의견제출자 : 배진한 (사랑의 병원 주소 :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4번지)

| 입법 예고안 | 의견제출내용 | 검토의견 | 비고 |
|--|---|--|-----|
| 제7조 (위탁운영) 1.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이상인 전문의가 설립한 의료법인 |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이상인 전문의가 설립한 의료법인 | ○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설립한 병원급이상 의료법인의 병원관리능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전문의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 미반영 |
| 2.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이상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없음 | | |
| 3.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 설립한 의료법인 |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7년이상 근무한 외과 전문의로 노인병인 정의 자격을 갖춘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 ○ 노인의 치매환자 위주 노인성질환을 다르기 위한 치매병원의 진료특성상 외과, 내과전문의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미반영 |

근거법령 : 의료법 제30조 병원개설 조건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1354 |
|----------|------|

제안년월일 : 2005. 9. 1.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 이유

- 병상수증설로 인한 수지타산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노인 전문병원에 운영비 지원은 타당하지 않아 이에 맞게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함.
- 제3조제7호 중 “계몽”을 “홍보”로 수정함.(안 제3조)
- 제7조제2항 중 노인병원 운영비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수탁자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중 “시설 공사”를 “시설보강공사”로 수정함.(안 제7조)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제몽”을 “홍보”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병원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의 법인 시설과 인력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을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시설공사”를
“시설보강공사”로 한다.

조문대비표

| 원안 | 수정안 |
|---|---|
| <u>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u> | <u>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u> |
| 제3조(업무) 1.~6. (생략) 7.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u>계몽</u> 8.~9. (생략) | 제3조(업무) 1.~6. (원안과 같음) 7.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u>홍보</u> 8.~9. (원안과 같음) |
| 제7조(위탁운영) ① (생략) <u>②노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병원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u> <u>다만, 수탁자의 법인 시설과 인력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u> <u>③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노인병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u>④~⑤ (생략)</u> | 제7조(위탁운영) ① (원안과 같음) <u>②.....</u> <u>.....</u> <u>.....</u> <u>.....</u> <u>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u> <u>③.....</u> <u>.....</u> <u>... 시설보강공사,</u> <u>.....</u> <u>.....</u> <u>④~⑤ (원안과 같음)</u> |